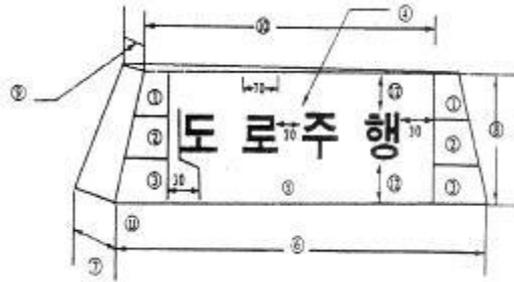

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31]

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(제102조제2항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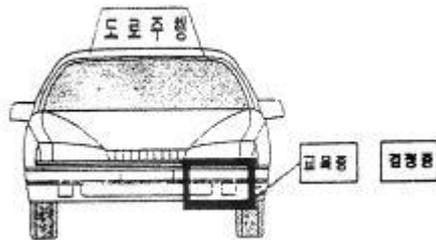
1. 표지등 모형 및 규격(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)

- ①적색
- ②황색
- ③녹색
- ④적색문자
- ⑤바탕색은 백색
- ⑥600밀리미터
- ⑦160밀리미터
- ⑧180밀리미터
- ⑨ 60밀리미터 ⑩500밀리미터
- ⑪100밀리미터 ⑫ 35밀리미터



2. 표지등 설치위치(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)

-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
- 도로주행교육중에는 "교육중"이라는 표지를,
도로주행기능검정중에는 "검정중"이라는 표지를
각각 자동차의 앞뒤범퍼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부착



3. 도색 및 표지

- 바탕색 : 황색(제1종 보통면허는 백색)
- 측면에 녹색으로 시·도 및 학원명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명), 후미에는 백색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고유번호를 표시



4. 제1종보통면허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(바탕색을 제외한다) 및 표지는 위에 준한다.